
노인인권 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노인요양시설 경산제일실버타운
경산제일실버복지센터

노인권리보호

● 인권이란

1) 인권의 개념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권리이며 천부적으로 갖게 되는 자연적 권리에서부터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포함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의 특성

- ① 천부적이고 생리적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가 아닌 인간답게 살 권리
- ② 성, 연령,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이기에 갖는 보편적 권리
- ③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 ④ 책임을 동반한 권리
- ⑤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기본권) 이상의 권리

●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법의 노인 학대 관련 조항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한다.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 ① 제39조의 6에 의하여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 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3)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 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제39조의9 (금지행위)

-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5) 제39조의10 (조사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제39조의11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의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폭행, 신체를 강제로 억압, 물리적인 힘에 의한 위협	욕설, 고의적인 따돌림, 무시	노인의 재산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갈취
성적 학대	방임 및 자기방임	유 기
		
성폭력, 성희롱	의식주,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노인 학대 예방센터 업무수행 지침(2004.9)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다음과 같음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흥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찢린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 (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 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 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멍들 ☒ 꼬집힘 ☒ 찢김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골절 ☒ 인대손상 ☒ 화상 ☒ 호흡곤란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 (수전증) ☒ 의식장애 ☒ 사망 ☒ 부종 ☒ 할퀴 ☒ 물어뜯김 ☒ 경미한 출혈 ☒ 묶은 흔적 ☒ 뺨(접질림) ☒ 탈골 ☒ 고막파열 ☒ 복부출혈 ☒ 두개골 골절 ☒ 뇌손상 ☒ 뇌사 ☒ 기타

2) 언어.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양로원 등의 센터로 보 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 라고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 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 상태 : 우울, 공포, 혼돈 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 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숙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 욕설 ☒ 대꾸 안 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휴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 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사용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	--	---

3) 성적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 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하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 폭행한후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흥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남녀구별 필요 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 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 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 (연금, 임대료, 수당 등)들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 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 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 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 갈취 ☒ 재산권사용제한 (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해약한다.	었다.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	-----	---

5)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 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 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 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6) 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히기, 기저귀교환, 손톱 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 (보청기, 당뇨 체크기구 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 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하고 연락을 두절 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센터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 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감금 형태 센터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 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 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가 없다	☒ 노인을 길, 센터, 낯선 장소에 버림 ☒ 반 감금 형태에 센터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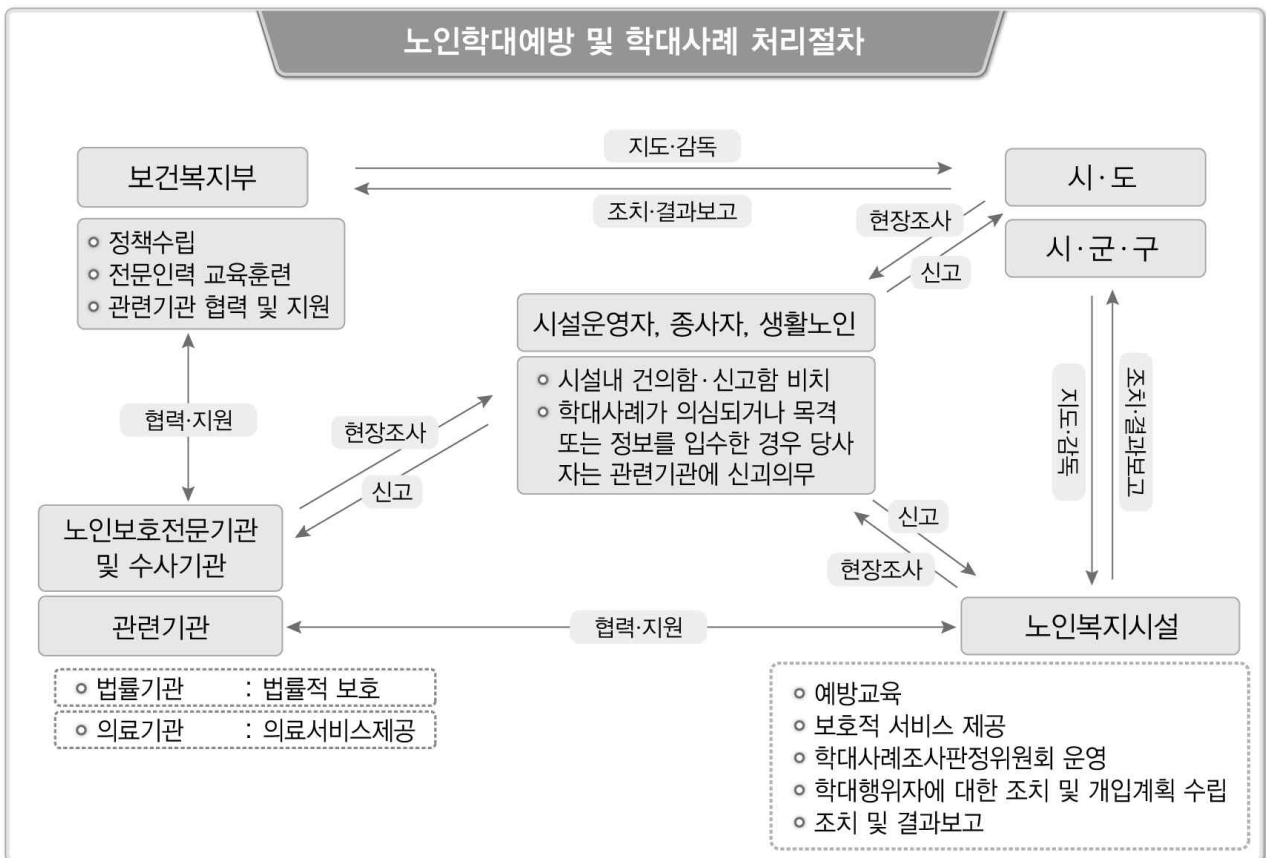
● 노인학대예방 10대 수칙

- ①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 ②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 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 ④ 노인 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 ⑤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 ⑥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는 도물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 ⑦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 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 ⑧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⑨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⑩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 노인학대예방

-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1) 센터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 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센터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학대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 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3)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 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 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5)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 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결정한다
- 6)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의 인권침해와 요양보호사의 역할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중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앙 노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에 신고된 노인 학대사례 전체 3,520건 중 가정 내 학대가 2,925건으로 총 83.1%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한 노인의 인권침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 내 학대가 더욱 심각한 것은 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가족관계 특성상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려는 성향이 강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노인학대의 시작이 대부분 정서적 학대에서 시작되어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로 이어지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 뚜렷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노인학대가 심각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 수급자의 인권보호

본 기관의 수급자는 다음의 인권 보호의 권리를 갖으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하고 수급자를 대해야 한다.

-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③ 개인의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 ④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⑤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⑥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에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 ⑦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할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⑧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⑨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종결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 효과적인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

1. 개인적 측면

- 사회적 교류를 유지, 친구 숫자 늘이기
- 사회활동이나 지역활동 적극 참여하기
- 자원봉사하기
-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본인 통장에 직접 입금 조치하기
- 확인 전까지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기 말기

2. 가족적 측면

- 수발 등 도움이 되는 대체자원 찾기
- 노인의 독립성 및 사생활지지
- 친척, 옛 친구,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 노인 수발자의 가족 능력 확인

3. 지역공동체 측면

- 수발 가족을 위한 방향 모색
-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
- 학대는 범죄임을 인지 교육
- 지역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 유도

4. 학대 피해요인

- 노인요인 : 개인적인 특성, 의존성
- 행위자 요인 : 개인적인 특성, 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
- 가족 환경적인 요인 : 경제적 문제, 가족불화, 힘의 갈등, 가족 폭력 전이
- 사회 환경적인 요인 :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 및 부양의식 변화

○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노인보호전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각 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 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 훈련,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센터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센터와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제1항 제2조의 보호조치 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센터와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제1항 제2호의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 조치 등

4) 노인복지센터

- 센터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유, 센터 내 학 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 된 센터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센터의 학대사례 판 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 보호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 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 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통,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